

시설장비 검사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제조검사: 제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설치검사·수시검사: 15일 정기검사: 30일
------	-----	------	---

검사종류	[] 제조검사 [] 설치검사 [] 정기검사 [] 수시검사
------	--

신청인	업체명
	주 소
	전화번호(팩스)

신청내용	시설장비명	
	관리번호	
	검사회망 기간	검사 장소
	제조자의 상호	
	검사요구 내용	

「항만법」 제33조제1항 및 「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 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검사대행기관의 장

첨부서류	1. 제조검사: 설계 설명서, 도면, 용량계산서, 강도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 2. 설치검사: 설계 설명서, 도면, 시험성적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 3. 수시검사: 설계 설명서, 도면, 구조변경에 따른 구조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	검사 수수료
		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름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